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청 소 년 활 동 진 흥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김현숙 (여성가족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청소년수련지구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 중 「공중위생법」에 따른 목욕장업의 경우 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로 보기 어려워 금지시설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

3. 주요내용

가. 청소년수련지구 내 설치 금지시설 중 목욕장업 삭제(안 제29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수련지구 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) ① (생 략) ②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수련 지구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 략) 2. 「 <u>공중위생관리법</u> 」 제2조제 3호의 목욕장업 중 여성가족 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3. ~ 8. (생 략) ③ (생 략)	제29조(수련지구 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3. ~ 8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263